

'0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5차)

검 토 보 고 서

-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
- 공중보건의사 관사 구입

총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5차)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11. 29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05. 11. 29

라. 의안번호 : 제2005 - 80호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 「재방재정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

나.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77조, 제82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89조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다.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구분	소재지	물건	수량 (㎡)	예정금액 (천원)	비 고
행정 재산	거창읍 일원(미정)	건 물	1식	4,400,000	거창사과테마파크 사업
		토 지	100,000	1,800,000	
"	거창읍 동변리 산2-1	조형물	1식	150,000	거창사과 조형물 설치
	마리면 말흘리 215-3	"	1식		
"	거창읍 일원	아파트	2동	150,000	공중보건의사 관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 거창사과와 연계한 관광테마 개발과 체험을 위한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사업비 62억원(균특44억원, 자체 18억원)의 사업비로 거창군 일원에 추진하려는 것으로 타 법령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방재정법」 및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동 사업을 위하여 2005년도 시설비 6억원이 기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2005년 당초예산 심의 전에 의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향후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 2003년도 수립된 제3차 거창군 종합계획(용역기관 : 경남발전연구원)에 의하면 동 사업의 적정지로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일원으로 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수립시 위치를 거창군 일원으로 하면서 위 지역을 표시) 2005.9 경남개발연구원과 용역체결(2005.9.30~12.26) 하면서 대상지역을 거창읍과 가조면을 추가하여 적정지를 선정토록 용역과업을 부과함에 따라 현재까지 적정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된 것임.

○ 동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장기간 계속될 사업이며, 경상남도 지방투융자심의에서도 예산확보 타당성 검토후 사업추진 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는 것으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

여는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2006년도 예산계상액은 17억원으로 기 확보한 예산 6억원을 감안하면 39억원이 추가 소요됨.

○ 동 건은 대상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산확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대상지가 확정되면 별도의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동의를 받아야 함.

◆ 거창사과조형물 설치 사업

○ 거창사과의 홍보를 위하여 국도변에 사과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재방재정법」 및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임.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한 후 계상하여야 하나, 동 사업은 2005년도에 예산승인을 받으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사과조형물의 설치 장소로는 고속도로변이 적정한 것이나 현재 88고속도로는 4차선 확장계획이 진행 중이어서 고속도로관리청과의 협의와 향후 확장시 이설 등에 문제점이 있어 국도변으로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검토됨.

○ 도로변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도로관리청과의 협의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타 법령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공중보건 의사 관사 구입

○ 폐지된 (구)남하보건지소를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 4명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남하면장으로부터 주민자치센터설치를 위하여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공중보건 의사들의 관사로 사용할 아파트구입 예산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동의를 득하려는 것임.

○ 공중보건 의사제도는 1981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초기의 단순한 진료업무에서 현재는 보건위생, 건강증진, 예방보건 등의 보건사업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현재 거창군내에는 총 30명의 공중보건 의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중 보건소에는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남하보건지소 관사에 4명, 마리보건지소 관사에 4명, 주상보건지소 관사에 1명, 자체 구입 거주 1명인 것으로 파악됨.

○ 공중보건 의사는 현재 연간 1,6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제공(국비)받고 있으며, 별도 관사를 구입해 주도록 법률에 의무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나, 공중보건 의사제도 운영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관사 등의 주거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타 시군도 공중보건 의사에 대하여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 점, 지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차원에서 관사를 구입제공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취득하려는 재산의 위치, 규모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향후 적정위치가 선정되어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대상지 확정전 의회의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동의를 득하여야 할 것임.

4. 참고자료

□ 지방재정법

○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95·5·16, 96·4·27, 98·7·16, 2000·10·20, 2002·11·29>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